# 문수로 금호어울림 더 퍼스트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7.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9.08.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 남구)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08.)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2.09.08.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허가과 – 51655호(2023.09.0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54-7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37층 4개동 총 40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40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61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72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2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35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5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 주택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전용면적 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소계 |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등) |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계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민영주택 | 2023000450 | 01 | 084.8408A | 84A | 84.8408 | 31.1787 | 116.0195 | 61.2199 | 177.2394 | 28.6247 | 140 | 14 | 21 | 25 | 4 | 12 | 76 | 64 | 4 |
| | | 02 | 084.9106B | 84B | 84.9106 | 31.4937 | 116.4043 | 61.2703 | 177.6746 | 28.6483 | 128 | 13 | 20 | 23 | 4 | 11 | 71 | 57 | 4 |
| | | 03 | 084.8356C | 84C | 84.8356 | 32.2672 | 117.1028 | 61.2162 | 178.3190 | 28.6229 | 134 | 13 | 20 | 24 | 4 | 12 | 73 | 61 | 4 |
| | 합 계 | | | | | | | | | | 402 | 40 | 61 | 72 | 12 | 35 | 220 | 182 | 12 |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 으로 청약하여야 함.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함.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본 아파트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시설별(아파트, 상가) 대지지분은 각 시설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아파트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각 세대의 전용면적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니, 청약신청자 및 계약자는 이를 분명히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각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이 경우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 및 계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 평형환산방법 : 주택공급면적(㎡) x 0.3025 또는 주택공급면적(㎡) ÷ 3.3058)
※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 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공급 금액 및 납부 일정

(단위 : 원)

| 주택형(약식표기) | 공급세대수 | 동별 | 층별 | 해당세대수 | 분양가격 대지비 | 건축비 | 세대별 분양가 | 계약금(10%) 계약 시 | 계약 후 30일 이내 | 중도금(60%) 1회(10%) 2024.05.20. | 2회(10%) 2024.08.20. | 3회(10%) 2024.11.20. | 4회(10%) 2025.03.20. | 5회(10%) 2025.07.20. | 6회(10%) 2025.09.22. | 잔금(30%) 입주 시 |
|---|---|---|---|---|---|---|---|---|---|---|---|---|---|---|---|---|
| 84A | 140 | 101동2호 102동2호 103동2호 104동2호 | 1 | 2 | 267,156,860 | 420,843,140 | 688,000,000 | 15,000,000 | 53,800,000 | 68,800,000 | 68,800,000 | 68,800,000 | 68,800,000 | 68,800,000 | 68,800,000 | 206,400,000 |
| | | | 2 | 4 | 267,156,860 | 431,843,140 | 699,000,000 | 15,000,000 | 54,900,000 | 69,900,000 | 69,900,000 | 69,900,000 | 69,900,000 | 69,900,000 | 69,900,000 | 209,700,000 |
| | | | 3 | 4 | 267,156,860 | 442,843,140 | 710,000,000 | 15,000,000 | 56,000,000 | 71,000,000 | 71,000,000 | 71,000,000 | 71,000,000 | 71,000,000 | 71,000,000 | 213,000,000 |
| | | | 4 | 4 | 267,156,860 | 449,843,140 | 717,000,000 | 15,000,000 | 56,700,000 | 71,700,000 | 71,700,000 | 71,700,000 | 71,700,000 | 71,700,000 | 71,700,000 | 215,100,000 |
| | | | 5~15 | 44 | 267,156,860 | 456,843,140 | 724,000,000 | 15,000,000 | 57,400,000 | 72,400,000 | 72,400,000 | 72,400,000 | 72,400,000 | 72,400,000 | 72,400,000 | 217,200,000 |
| | | | 16~29 | 56 | 267,156,860 | 465,843,140 | 733,000,000 | 15,000,000 | 58,300,000 | 73,300,000 | 73,300,000 | 73,300,000 | 73,300,000 | 73,300,000 | 73,300,000 | 219,900,000 |
| | | | 30~37 | 26 | 267,156,860 | 478,843,140 | 746,000,000 | 15,000,000 | 59,600,000 | 74,600,000 | 74,600,000 | 74,600,000 | 74,600,000 | 74,600,000 | 74,600,000 | 223,800,000 |
| 84B | 128 | 101동3호 102동1호 103동3호 104동1호 | 1 | 2 | 267,376,660 | 408,623,340 | 676,000,000 | 15,000,000 | 52,600,000 | 67,600,000 | 67,600,000 | 67,600,000 | 67,600,000 | 67,600,000 | 67,600,000 | 202,800,000 |
| | | | 2 | 4 | 267,376,660 | 419,623,340 | 687,000,000 | 15,000,000 | 53,700,000 | 68,700,000 | 68,700,000 | 68,700,000 | 68,700,000 | 68,700,000 | 68,700,000 | 206,100,000 |
| | | | 3 | 4 | 267,376,660 | 430,623,340 | 698,000,000 | 15,000,000 | 54,800,000 | 69,800,000 | 69,800,000 | 69,800,000 | 69,800,000 | 69,800,000 | 69,800,000 | 209,400,000 |
| | | | 4 | 4 | 267,376,660 | 437,623,340 | 705,000,000 | 15,000,000 | 55,500,000 | 70,500,000 | 70,500,000 | 70,500,000 | 70,500,000 | 70,500,000 | 70,500,000 | 211,500,000 |
| | | | 5~15 | 44 | 267,376,660 | 444,623,340 | 712,000,000 | 15,000,000 | 56,200,000 | 71,200,000 | 71,200,000 | 71,200,000 | 71,200,000 | 71,200,000 | 71,200,000 | 213,600,000 |
| | | | 16~29 | 56 | 267,376,660 | 453,623,340 | 721,000,000 | 15,000,000 | 57,100,000 | 72,100,000 | 72,100,000 | 72,100,000 | 72,100,000 | 72,100,000 | 72,100,000 | 216,300,000 |
| | | | 30~36 | 14 | 267,376,660 | 465,623,340 | 733,000,000 | 15,000,000 | 58,300,000 | 73,300,000 | 73,300,000 | 73,300,000 | 73,300,000 | 73,300,000 | 73,300,000 | 219,900,000 |
| 84C | 134 | 101동1호 102동3호 103동1호 104동3호 | 1 | 2 | 267,140,490 | 433,859,510 | 701,000,000 | 15,000,000 | 55,100,000 | 70,100,000 | 70,100,000 | 70,100,000 | 70,100,000 | 70,100,000 | 70,100,000 | 210,300,000 |
| | | | 2 | 4 | 267,140,490 | 444,859,510 | 712,000,000 | 15,000,000 | 56,200,000 | 71,200,000 | 71,200,000 | 71,200,000 | 71,200,000 | 71,200,000 | 71,200,000 | 213,600,000 |
| | | | 3 | 4 | 267,140,490 | 455,859,510 | 723,000,000 | 15,000,000 | 57,300,000 | 72,300,000 | 72,300,000 | 72,300,000 | 72,300,000 | 72,300,000 | 72,300,000 | 216,900,000 |
| | | | 4 | 4 | 267,140,490 | 463,859,510 | 731,000,000 | 15,000,000 | 58,10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73,100,000 | 219,300,000 |
| | | | 5~15 | 44 | 267,140,490 | 470,859,510 | 738,000,000 | 15,000,000 | 58,800,000 | 73,800,000 | 73,800,000 | 73,800,000 | 73,800,000 | 73,800,000 | 73,800,000 | 221,400,000 |
| | | | 16~29 | 56 | 267,140,490 | 480,859,510 | 748,000,000 | 15,000,000 | 59,800,000 | 74,800,000 | 74,800,000 | 74,800,000 | 74,800,000 | 74,800,000 | 74,800,000 | 224,400,000 |
| | | | 30~37 | 20 | 267,140,490 | 492,859,510 | 760,000,000 | 15,000,000 | 61,000,000 | 76,000,000 | 76,000,000 | 76,000,000 | 76,000,000 | 76,000,000 | 76,000,000 | 228,000,000 |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님.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잔여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2 공급일정 및 장소

| 구 분 |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반 1순위 | 일반 2순위 | 당첨자발표 | 당첨자 서류제출 (자격확인) | 계약체결 |
|---|---|---|---|---|---|---|
| 일 정 | 09월 18일(월) | 09월 19일(화) | 09월 20일(수) | 09월 26일(화) | 10월 02일(월) ~ 10월 08일(일) | 10월 10일(화) ~ 10월 12일(목) |
| 방 법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방문접수 (10:00 ~ 16:00) | 방문계약 (10:00 ~ 16:00) |
| 장 소 | • 문수로 금호어울림 더 퍼스트 견본주택<br>•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br>*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 | | | • 문수로 금호어울림 더 퍼스트 견본주택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51-6번지) | |

## 3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격

- 특별공급 공통사항

| 구분 | 내용 |
|---|---|
| 1회 한정/자격요건/자격제한 |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br>•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 무주택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br>※ 소형 ·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br>※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br>–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br>–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br>※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br>가. 주택공급신청자<br>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br>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br>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br>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구분 | 내용 |
|---|---|
| 청약자격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br>–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br>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br>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br>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br>–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br>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br>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br>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br>※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 일반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울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기타지역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 신청자 중 동일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울산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 구분 | 순위 | 주택형 | 청약관련 신청자격 |
|---|---|---|---|
| 민영주택 | 1순위 | 전용 60㎡초과 85㎡이하 |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40%) 및 추첨제(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br>•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br>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br>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br>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br>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 2순위 | 전 주택형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 · 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판단 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가점제 관련 내용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입주자저축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구 분 | 울산광역시(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경상남도(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전용면적 85㎡ 이하 | 25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400만원 | 60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700만원 | 1,000만원 | 400만원 |
| 모든면적 | 1,0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4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 구 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 수협은행 | 1010-2229-8097 | 코리아신탁(주) | |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계약금 무통장입금 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5 분양보증 사항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주택도시 보증공사 보증 주요내용

|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 제01292023-101-0004800호 | 205,438,800,000원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까지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 |

## 6 기타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구 분 | 건축감리 | 전기감리 | 정보통신, 소방감리 |
|---|---|---|---|
| 상 호 | ㈜해동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 ㈜한국코아엔지니어링 | ㈜주신엔지니어링 |
| 금 액 | 1,519,489,800 | 526,722,600 | 202,730,000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구 분 | 사업주체(시행수탁자) | 시공사 | 시행위탁자 |
|---|---|---|---|
| 상 호 | 코리아신탁(주) | 금호건설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이스타 |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대치동, 해성2빌딩10층)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송월동)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6로 40, 5층 503호 |
| 사업자등록번호 | 215-86-52007 | 104-81-31309 | 297-81-01728 |

- 관리형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1) 본 분양대상 목적물은 위탁자 주식회사 에이스타와 수탁자 코리아신탁(주)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에 따라 코리아신탁(주)이 공급하는 건으로서, 코리아신탁(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의 의무사항만을 부담할 뿐이고, 본 분양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분양사업자는 위탁자 주식회사 에이스타임을 계약자는 인지하고 동의한다.
  (2) 수탁자 코리아신탁(주)은 위탁자 주식회사 에이스타로부터 토지를 수탁 받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오로지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해약금반환, 입주지연시의 지체상금 책임 등)는 위탁자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에이스타가 부담한다.
  (3) 본 사업 관련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해지 및 종료(정산 포함)되는 경우 또는 "을"(매수인)에게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선도래 시점"에, 코리아신탁(주)이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도 위탁자 주식회사 에이스타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이에 대하여 매수인 "을"은 이에 동의하고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4) 하자보수에 대한 일체 책임은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자 주식회사 에이스타 또는 시공사 금호건설 주식회사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5)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6) 코리아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 매수인 "을"은 반드시 코리아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7) 위탁자 주식회사 에이스타 또는 매수인 "을"은, 분양계약체결 또는 전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발생시 해당 기한내(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8) 코리아신탁(주)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자 주식회사 에이스타와 매수인("을")간에 또는 시공사 금호건설 주식회사와 매수인("을")간에 "별도의 특약"이 설정된 경우, 해당 별도의 특약은 코리아신탁(주)에 대해서는 일체 효력이 없다.
  (9) 본 특약사항의 내용은, 본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 어느 조항보다도 우선하여 적용한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사이버모델하우스) : 문수로 금호어울림 더 퍼스트 홈페이지(https://msr-khapt.com)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람.(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람.

견본주택 | 울산시 남구 달동 1251-6번지

현장 | 울산시 남구 신정동 1154-7번지 일원

문수로 금호어울림 더 퍼스트

**1811-6402**

총 402세대 | 84㎡A / 84㎡B / 84㎡C

시행 KOREA trust 코리아신탁 시공 금호건설